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2. 15 선고 2022가단1205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2. 1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(D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. 4. 12. 접수 제18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망 E(2020. 11. 24. 사망)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고, 피고와 망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는 F, C, G이 있다.

나. 원고는, 소외 주식회사 H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전전 양수하고,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6. 8. 19. C을 상대로 “C은 원고에게 17,070,135원 및 그중 4,432,0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5799)을 받았다.

라. 망 E의 사망 후에, 피고는 2021. 4. 1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1. 24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피고와 C이 2020. 11. 2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할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와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(C의 법정상속분)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0. 11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. 4. 12. 접수

제18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범용

별지